

# 해양수산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제협약 수용위해 현행 제도 미비점 개선

선원에 대한 국제협약 내용을 수용하기 위하여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 감사제도(Member-state Audit Scheme)가 2006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에 대비하여 선원에 대한 국제협약사항 중 선원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과 기타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선장은 이상기상이나 표류물, 침몰물 등 선박의 항행에 위험을 줄 염려가 있는 것과 마주칠 경우 인근 선박이나 해양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해외에서 이상기상 등을 마주칠 경우 인근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통보의무를 추가하는 한편, 국제협약에 의한 의무이행으로 선박의 항행안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선장의 통보의무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선원의 하선 공인 신청을 허용(제45조제3항)하도록 했다.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승무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승무원 명부와 선원의 선원수첩에 대해 해양수산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행방불명되거나 하선 공인을 기피하는 등의 경우 선원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선원의 하선공인 신청 허용으로 다른 선박에의 취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선원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외국선박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확대

(제114조)했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제협약중 일부에 대하여 시행하던 것을 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국제협약에 따른 항만국통제로 선박의 안전운행에 기여하도록 했다.

선원관련 분쟁에 대한 국제협조 조항(제126조)을 신설했다.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선사 또는 선원의 국제협약 위반으로 외국정부가 선사 또는 선원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외국정부에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제협약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 국제협약의 적정이행 근거를 마련하였다.

